# 더샵 광주포레스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Ж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입주자모	L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거주:	다 비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최초당첨자발표일(2020.06.18.)로부터 6개월이므로 이미 도과하였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5.31(금)	2024.06.05(수)	2024.06.07(금)	2024.06.12(수)	2024.06.14(금)	2024.06.17(월)

# Ι

## 공통 유의사항

####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이미 공사 완료된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 점 청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준공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로서 준공 후 임시숙소로 사용된 세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해서 당첨된 동·호수를 오픈할 예정이오 니, 세대 방문 시 상품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여야 하고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계약취소주택으로 공사 완료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이며 계약 체결 후 정해진 입주기간에 입주해야 하는 아파트입니다.
- ※ 본 아파트는 계약금 이외에 2024년 07월 17일 이내에 잔금 80%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후 잔금대출은 사업주체에서 알선하지 않으며, 자금여력으로 인한 계약 해제시 받는 불이익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 더샵 광주포레스트 분양 상담 전화(062-365-7778)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u>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u>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계약취소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 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취소주택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본 공고의 공급대상은 3세대로 본 공고상의 동호수 외에 동호수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단, 금회 일반공급 배정 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지 않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 분양사무소에서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 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유의사항

I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5.31.(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4930030**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5.28.(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0000612**이므로,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05.31(금)	2024.06.05(수)	2024.06.07(금)	2024.06.12(수)	2024.06.14(금)	2024.06.17(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	■ (PC·모바일) 청약홈 (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근화이앤씨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 대로 249번길12 더샵광주포 레스트 107동 404호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광주광역시 북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0.06.18.)로부터 6개월간 적용되므로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북구청 공동주택과-17316호(2024.05.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249번길 12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9층 6개동 총 907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3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 1세대, 일반공급 2세대]

■ 입주시기 : 2024년 07월 입주(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입 완료 후 입주가능)

■ 공급대상

III

			주택형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ᅰ야	ulcii <del>nu</del>	****	특별공급세대수	ОГНГД Д
주택 관리번호	동 호	구혁명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신혼부부	일반공급 세대수
	103-404	084.9987A	84A	84.9987	28.2489	113.2476	43.5915	156.8391	22.58	1		1
2024930030	101-1003	09407070	84B	84.9797	29.8370	114.8167	43.7080	158.5247	22.57	2	1	
2024930030	24930030 084.9797B	004.9797B	04D	84.9797	29.7916	114.7713	43.5817	158.3530	22.57	7 2	'	
	합 계							3	1	2		

#### ■ 공동주택 공급금액 (분양대금)

(단위: 원, 부가세 없음)

주택형	약식표기	동 호	층구분		아파트 공급금액		계약금(20%)	잔금(80%)
(전용면적기준)	학액표기	요 포	ਰਾਦ	대지비(A)	건축비(B)	계(A+B)	계약시	2024년 7월 17일
084.9987A	84A	103-404	4층	105,951,070	357,048,930	463,000,000	92,600,000	370,400,000
004.07070	040	101-1003	10층	109,496,420	368,503,580	478,000,000	95,600,000	382,400,000
084.9797B 84B	105-903	9층	109,496,420	368,503,580	478,000,000	95,600,000	382,400,000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분양가 외 사업주체가 해당주택을 취득 및 재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재취득비용, 이자, 세금, 관리비, 수수료)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지정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 ※ 분양대금은 계약금 20%, 잔금 80% 로 나누어 납부 하며, 잔금 80%는 실입주일 또는 키불출일 중 빠른 날짜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단, 잔금납부 마감일인 2024.07.17. 이후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연체료 부과 및 해지요건에 따릅니다.
- ※ 계약 전 현장 방문 등으로 주변 여건을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 별도 계약 품목 및 무상 선택 품목(발코니 확장, 플러스 옵션) -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한 항목으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동 호	확장금액	계약금(20%) 계약시	잔금(80%) 2024년 7월 17일
084.9987A	103-404	14,500,000	2,900,000	11,600,000
084.9797B	101-1003	14,500,000	2,900,000	11,600,000
	105-903	14,500,000	2,900,000	11,600,000

- ※ 지정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 ※ 계약금 및 잔금은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분양사무소 현금수납불가)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위:원,부가세 포함)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대피공간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 플러스 옵션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동 호	옵션내용	옵션금액	계약금(20%) 계약시	잔금(80%) 2024년 7월 17일
084.9987A	103-404	시스템에어컨 선택1	5,000,000	1,000,000	4,000,000
	101-1003	시스템에어컨 선택1	5,000,000	1,000,000	4,000,000
		시스템에어컨 선택2	7,400,000	1,480,000	5,920,000
084.9797B	105.003	엔지니어드스톤(주방벽)	1,400,000	280,000	1,120,000
	105-903	현관중문	1,200,000	240,000	960,000
		알파룸	350,000	70,000	280,000

- ※ 지정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 ※ 계약금 및 잔금은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분양사무소 현금수납불가)
- ※ 플러스옵션 공급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 비용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플러스옵션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플러스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공급대금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하나은행	144-910025-48104	㈜무궁화신탁
·····································	· 아니는행	144-910025-46104	(#구성확선됨

- ※ 공동주택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플러스옵션품목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실 및 계약체결 장소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 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 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u>-</u>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계약금	하나은행	144-910025-52004	㈜무궁화신탁
공사대금	잔금	어디근당	144-910023-32004	ਲਾਜ਼ ਨੁਸ਼ਦੂਰ

-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공동주택 공급대금 및 플러스옵션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실 및 계약체결 장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 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플러스옵션품목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플러스옵션품목	계약금	하나은행	144-910025-53604	㈜무궁화신탁
르니_답건품즉	잔금	아니는 8	144-910023-33004	のするギビゴ

- ※ 플러스옵션품목 납부계좌는 공급대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실 및 계약체결 장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 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지정된 계약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플러스옵션품목(시스템에어컨 등)은 시행위탁자인 ㈜근화이앤씨에 의해 공급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공급자로서 일체의 의무와 책임은 시행위탁자가 부담하고, 시행수탁자인 ㈜무궁 화신탁은 플러스옵션품목(시스템에어컨)과 관련하여 면책됨을 계약자는 확인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입주금 납부안내

- ※ 잔금은 입주 시 세대 출입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합니다.(은행 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 잔금 납부 기일은 계약 후 2024.07.17.까지이며 그 전에 입주할 경우 세대 출입 열쇠 수령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실입주일(열쇠수령일) 또는 2024.07.17. 이후부터는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잔금납부 지정일(2024.07.17.) 또는 실입주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수입인지 가격 15만원)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Ⅳ 특별공급

구분			내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다	l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	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					
	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	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공급기준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빌	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겨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검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 분 단위 점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인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면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선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3	보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요건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							
т.С		1 1 1 1 0 2 2 2						

# Ⅳ-1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구분	내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b>광주광역시에 거주</b> 하는 <b>무주택세대구성원</b>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대상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온무무 -	구택 특별공급 운영. ───	3시심」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	로는 시인기군을	중쪽아는 문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	점								
		입주자모집공고	·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	점	사업자 및 프	드리랜서 등 소득 획	학인 시점
		2024.05.31.(=	(금)		(해당 세대	내의) 전년도 소득		(해당 시	네대의) 전전년도 :	소득
	- 2023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78		비오			소-	득금액		
		구분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부부 중 현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	경우	140% 이하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
	부부 5	고두 소득이 있는 경우	2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
	입주자 모집공 ※ (월평균 소득	·고일을 기준으로 최 산정 대상) 가구원수	최근 1년이성 수에 포함되	상 계속하여 공급신청  는 가구원 중 만19서	J자 또는 그 배우기 ∥ 이상인 성년자(시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		게만 포함	
비고	입주자 모집공 ※ (월평균 소득 불가능한 경우 ※ (월평균소득) 소득금액증명성 사업기간(사업 ※ 소득산정은 경 "주택청약 FAC 증빙서류를 획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성 강보험법시행	는고일을 기준으로 최 산정 대상) 가구원수 아이는 주민등록표등는 소득산정 대상자별 상의 지급받은 총액( 자등록증상의 기간)의 청약신청자의 상황(겨 고(국토교통부 발간)** 단인한 후 청약하시기 산출기준 : 「공공주의 령」 제42조제1항에	최근 1년이성 수에 포함되 본 말소를 열 월평균소년 (수입금액)을 )으로 나누( 계속적인 근 "를 확인하 기 바람.	상 계속하여 공급신청  는 가구원 중 만19서 확인하고 소득산정 [ 득을 합산한 금액. 근 을 근로기간(재직증명	자 또는 그 배우가에 이상인 성년자(사 대상에서 제외 로자의 경우에는 서상의 근무월수). 신규취업자, 이직지 자료가 제출되지	자와 같은 세대별 세대주인 미성년자 비과세소득이 제외으로 나누어 산정 나, 신규사업자, 프리 않으면 부적격 처	주민등록표에 등 (자녀양육, 형제지 리된 전년도 근로스 하고, 사업자인 경 리랜서 등)에 따리 리 또는 계약 포기	재되어 있는 경우(아) 바매 부양() 포함() 단소득원천징수영수경 경우에는 전년도 소나 산정 방식이 달려기로 간주될 수 있	에만 포함 - , 세대원의 실종 · - 등상의 총급여액(21 독금액증명 원본성 의 적용되므로 본인 으니 반드시 본인 에 따라 산출된 -	등으로 소득파 번) 및 상 소득금액을 민의 상황을 의 자격요건 등
비고	입주자 모집공 ※ (월평균 소득 불가능한 경우 ※ (월평균소득) 소득금액증명성 사업기간(사업 ※ 소득산정은 경 "주택청약 FAC 증빙서류를 획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성	는고일을 기준으로 최 산정 대상) 가구원수 아이는 주민등록표등는 소득산정 대상자별 상의 지급받은 총액( 자등록증상의 기간)의 청약신청자의 상황(겨 고(국토교통부 발간)** 단인한 후 청약하시기 산출기준 : 「공공주의 령」 제42조제1항에	최근 1년이성 수에 포함되 본 말소를 열 월평균소년 (수입금액)을 )으로 나누( 계속적인 근 "를 확인하 기 바람.	상 계속하여 공급신청 I는 가구원 중 만19서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 독을 합산한 금액. 근 을 근로기간(재직증명 어 산정.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 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 또는 그 배우가에 이상인 성년자(사 대상에서 제외 로자의 경우에는 서상의 근무월수). 신규취업자, 이직지 자료가 제출되지	자와 같은 세대별 세대주인 미성년자 비과세소득이 제외으로 나누어 산정 나, 신규사업자, 프리 않으면 부적격 처 탁 입주자 보유 재산등급 29등급	주민등록표에 등 (자녀양육, 형제지 리된 전년도 근로스 하고, 사업자인 경 리랜서 등)에 따리 리 또는 계약 포기	재되어 있는 경우(아) 바매 부양() 포함() 단소득원천징수영수경 경우에는 전년도 소나 산정 방식이 달려기로 간주될 수 있	에만 포함 - , 세대원의 실종 · - 등상의 총급여액(21 독금액증명 원본성 의 적용되므로 본인 으니 반드시 본인 에 따라 산출된 -	등으로 소득파( 번) 및 상 소득금액을 민의 상황을 의 자격요건 및
비고	입주자 모집공 ※ (월평균 소득 불가능한 경우 ※ (월평균소득) 소득금액증명성 사업기간(사업 ※ 소득산정은 경 "주택청약 FAC 증빙서류를 획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성 강보험법시행 - 자산보유기준	는고일을 기준으로 최 산정 대상) 가구원수 에는 주민등록표등는 소득산정 대상자별 상의 지급받은 총액( 자등록증상의 기간)의 청약신청자의 상황(저 고(국토교통부 발간)" 단인한 후 청약하시기 산출기준 : 「공공주의 명」제42조제1항에 금액	최근 1년이성 수에 포함되 본 말소를 를 월평균소년 (수입금액)을 )으로 나누( 계속적인 근 "를 확인하 기 바람. 독택 특별법 에 따른 보	상 계속하여 공급신청 I는 가구원 중 만19서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 독을 합산한 금액. 근 을 근로기간(재직증명 어 산정. 근로자 또는 사업자, 선 여야 하며, 소득증빙 시행규칙」제13조의 험료 부과점수의 산 건축물가액은 해당 정한 시가표준액 적	자 또는 그 배우가에 이상인 성년자(시대상에서 제외로자의 경우에는 서상의 근무월수). 신규취업자, 이직지자료가 제출되지 제2항 및 「공공주정방법에서 정한 세대가 소유하고 성용	자와 같은 세대별 세대주인 미성년자 비과세소득이 제외으로 나누어 산정 사, 신규사업자, 프리 않으면 부적격 처 택 입주자 보유 재산등급 29등급	주민등록표에 등 (자녀양육, 형제지 리된 전년도 근로2 하고, 사업자인 경 리랜서 등)에 따리 리 또는 계약 포기 자산 관련 업무 하에 해당하는 재선	재되어 있는 경우여 가매 부양) 포함) 단 소득원천징수영수경 경우에는 전년도 소 가산정 방식이 달리 기로 간주될 수 있 처리기준」제4조인 산금액의 상한과 시가표준액으로	에만 포함	등으로 소득파 번) 및 ) 소득금액을 신의 상황을 의 자격요건 5
비고	입주자 모집공 ※ (월평균 소득 불가능한 경우 ※ (월평균소득) 소득금액증명성 사업기간(사업 ※ 소득산정은 경 "주택청약 FAC 증빙서류를 획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선 강보험법시행 - 자산보유기준  구분	는고일을 기준으로 최 산정 대상) 가구원수 에는 주민등록표등는 소득산정 대상자별 상의 지급받은 총액( 자등록증상의 기간)의 청약신청자의 상황(저 고(국토교통부 발간)" 단인한 후 청약하시기 산출기준 : 「공공주의 명」제42조제1항에 금액	최근 1년이성 수에 포함되 본 말소를 를 월평균소년 ((수입금액)원 )으로 나누( 계속적인 근 "를 확인하이 기 바람.	상 계속하여 공급신청 I는 가구원 중 만19서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 독을 합산한 금액. 근 을 근로기간(재직증명 어 산정. 근로자 또는 사업자, 선 여야 하며, 소득증빙 시행규칙」제13조의 험료 부과점수의 산 건축물가액은 해당 정한 시가표준액 적	자 또는 그 배우가에 이상인 성년자(시대상에서 제외로자의 경우에는 서상의 근무월수). 신규취업자, 이직자자료가 제출되지 제2항 및 「공공주정방법에서 정한 세대가 소유하고	자와 같은 세대별 세대주인 미성년자 비과세소득이 제외으로 나누어 산정 사, 신규사업자, 프리 않으면 부적격 처 택 입주자 보유 재산등급 29등급	주민등록표에 등 (자녀양육, 형제지 리된 전년도 근로2 하고, 사업자인 경 리랜서 등)에 따리 리 또는 계약 포기 자산 관련 업무 하에 해당하는 재선	재되어 있는 경우여 가매 부양) 포함) 단 소득원천징수영수경 경우에는 전년도 소 가산정 방식이 달리 기로 간주될 수 있 처리기준」제4조인 산금액의 상한과	에만 포함	등으로 소득파 번) 및 ) 소득금액을 !의 상황을 의 자격요건 5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금액 단, 아 * 「농 <sup>7</sup> 농업	래 경우는 제외 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힘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토지	허가* * 공부 * 종중 받는	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자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대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광주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1~2)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 있지 않은 자 (외국인은 청약신청 불가) 1.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청약신청자 본인에 한함)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선정 제한기간 (부적격당첨자, 청약신청 본인에 한함)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별도 순위 없음)
비고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VI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취소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확인하여 드리는 - 서비스 이용은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b>이용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6.12.(수) ~ 2024.06.21.(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문자	- 제공일시: 2024.06.12.(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VII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T世	필수	해당자	예상시ㅠ	ᆯᆸ기단	ㅠ의사용	
공통서류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0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공급신청 시는 본인 서명으로 대체	

		1		1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 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및 피부양 직계존비속	· 본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23조 2항 7호에 의거 해외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해외체류(단신부임)관련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의거 당첨자(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체류(단신부임)관련 입증서류 참조]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
		0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으로 신청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공개" 발급)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차: 국민건항보험공단, FAX수신 문서 가능)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포함 발급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필수)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시하다다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접수처 비치)
신혼부부 · 특별공급 ·		0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국 <b>글</b> ㅇㅂ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혼인신고 전 출생자녀를 혼인기간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임신진단서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한정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접수처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제3자	0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대리인	0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접수처 비치

신청시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추가서류 📗 🦭		"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접수장소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출산휴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매월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재직증명서	①,②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① 세무서
자영업자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법인결산서 ②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②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홀수급자 증명서(원본)	① 주민센터
Н	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① 접수처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사실증명서(신고소득사실 없음)	
기타(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 서식을 통한 출사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거주지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 해당직장

-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직인날인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해외체류(단신부임)관련 입증서류

	서류	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등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0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 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든로자가 아닌 경우 (※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 는 생업사정 불인정
	0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의 해외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
		0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청약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
- ※ 청약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상기 예외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 ※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해당국가 출국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입국한 경우 해당국가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
- ※ 청약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외체류 예외규정 적용 불가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 일정 및 계약장소

VIII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 일시: 2024.06.12.(수)	※ 일시: 2024.06.14.(금) (10:00~16:00)	※ 일시: 2024.06.17.(월) (10:00~16:00)
특별공급	신혼부부	※ 확인방법	※ 장소	※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u>www.applyhome.co.kr</u> )	- (주)근화이앤씨	- (주)근화이앤씨
일반	반공급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249번길12 더샵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249번길12 더샵
	-0-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광주포레스트 107동 404호)	광주포레스트 107동 404호)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보유 등 자격검증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참고사항

ΙX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보는 경우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 Χ

####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등

- 입주예정일(잔금납부일): 2024.07.17.(수)
- ※ 입주예정일(잔금납부일) 전이라도 분양대금 완납 시 즉시 입주 가능
- 부대시설: 관리사무실, 어린이집, 노인정, 어린이물놀이터,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남자사우나(약 2.8M \* 약 1.9M), 여자사우나(약 2.8M \* 약 2.1M), 스크린골프장, 작은도서관, 독서실, 맘스스테이션, 코인세탁실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 기타유의사항:

다음의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및 "시 공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일정기간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 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택배 차량으로 인해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5. 본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6.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전유부분 이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8.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검사 전·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 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9.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 공장생산 자재 및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11. 해당 단지 입주세대의 통학학교(군)는 각화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6학교군 배정 예정임. ※ 단, 학군 내 학교설립 추진 상황 및 학생수 증감 등으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학생배정여건이 변화될 수 있으며, 학생배정계획은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12. 사업부지의 대지경계는 사업부지 전체의 고저차로 인하여 사업부지 외부와 단차가 발생합니다.
- 13. 각 동의 출입구 주변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14.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 시설, 포장, 기부채납 구간 등) ,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 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15. 단지 내 동간 거리에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각 동 인접 동과의 시각적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16.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7. 쓰레기수거장의 설치로 인한 미관저해, 냄새 및 소음, 분진,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 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8. 부대복리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지하수 차단 및 배출장치), 조경(식재, 포장, 어린이 놀이터 등)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19. 지붕 및 옥탑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공용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설비,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 | 명 및 빛의 산란, 기타 등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의 배치구조(어린이집, 경로당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조경공간(녹지, 각종 정원, 어린이물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운동시설, 휴 게시설 등)등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21.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22. 단지 내 설치 된 수경시설은 인계 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주체의 의무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냄새, 오염수, 해충, 개구리 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23.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 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임의사용에 의한 파손의 복구비용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따름)
- 24.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25. 입주 후 어린이물놀이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수도세, 전기세 등의 납부는 입주민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및 부주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입주 민 및 관리 주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26.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7.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8. 아파트 엘리베이터홀 창은 환기창으로 시공되며, 계단실은 5개층마다 1개소에 환기창이 설치됩니다
- 29.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주차장 썬큰)과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수거함 등이 일부 동의 전·후·측면의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조망 저해,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0.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1.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2. 실외기는 실외기실의 여건상 계약자가 희망하는 에어컨이 실외기실의 폭, 높이 및 전기사양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 불가할 수 있으므로 에어컨 전문 업체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33. 본 아파트의 주차장은 지상1층~지하3층 규모입니다. 지상1층 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7m로 유효층고 높이 범위내의 택배차량 출입이 될 수 있습니다.(지하1층 차로 외에는 2.3m 천정고 기준으로 시공)
- 34. 104동과 106동사이 지상2층으로 연결되는 비상차량(소방차) 동선이 계획되어 사용상 인근세대에 소음, 차량 조명에 의해 눈부심이 있을 수 있음으로 계약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 35. 해당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가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주차문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 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36. 본 아파는 인근에 호남고속도로 및 동문대로가 접하여 환경피해(소음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와 관련 도로관리기관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 트 인근 고속도로는 장래에 확장고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확장공사 후 소음도가 입주시점의 실측소음도(도로관리기관이 측정)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음 피해에 대한 이의 제 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사항은 최초입주민 및 완공 후 매매로 인하여 변경된 입주민에게도 적용됩니다.
- |37. 당 현장 부지 좌측에 구거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거로부터 발생하는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8. 사업지 남측에는 센트럴파크 서희스타힐스1차 및 2차가 있으며, 동측 각화 도매시장, 단지 주변에 존치건물 등이 인접하여 주변 소음, 먼지, 분진, 조망권, 세대간섭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9. 단지 남측의 서희스타힐스(1차,2차)로 인한 향 또는 층수에 따라 일조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 확인바라며, 일조량이 일조수인한도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 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0. 단지내 배치는 일반상업지역에 계획되는 특성상 동간 간격이 협소하여 세대간 프라이버시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충분한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 |41. 광주공항 내 노선증가 등의 사유로 인해 항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2. 사업지 출입구는 아파트 3개소, 오피스텔 1개소 총 4개의 출입구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 43.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4. 2층~3층(필로티 포함), 최상층 1개층 세대 내부에 동체감지기가 설치되며, 배터리 교체주기는 통상 1년 이며, 사용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5. 84A, 84B, 84C, 101A, 101B타입은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피난구 바닥에는 별도의 마감이 없으며 누수 방지를 위해 바닥 마감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 다.(각 동의 외부로 바로 연결되는 1층과 2층 세대는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46.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 47.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48.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 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49.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일부만 제공됩니다.

###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 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0.05.28.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 이익에 대해 에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자격검증 결과 주택소유,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 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 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 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 가격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 호	㈜무궁화신탁	㈜근화이앤씨	㈜포스코이앤씨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타워역삼)	광주광역시 동구 성촌길 17(운림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죽도동)
등록번호	110111-2867418	200111-0491426	174611-0002979

### ■ 관리형토지신탁

- 본 아파트는 시행위탁자 (주)근화이앤씨, 시행수탁자 (주)무궁화신탁, 시공사 (주)포스코이앤씨 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 및 관리형토지신탁사업약정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1. 시행수탁자는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재산의 보전 및 분양대금 완납자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하 며, 본 사업관련 실질적 사업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시행위탁자에 있음을 인지합니다.
- 2. 본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3. 시행위탁자와 시행수탁자간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일부 해지 및 일부 세대의 소유권이 시행수탁자에서 분양계약자로 이전된 경우, 해당 이전된 세대를 포함한다)와 동시에 분양계약 상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소유권이전,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의무 포함)는 계약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됨을 인지합니다.
- 4.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시행수탁자는 분양공급자(매도인)로서의 일체 의무(분양계약 해제/해지 시 분양대금 반환의무, 소유권이전 관련 업무, 입주지연 지체상금, 하자보수책임 등)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동 의무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약정에 따라,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자가 관리형토지신탁사업약정에 의하여 부담합니다.

- 5. 분양계약자는 시행수탁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시공 상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있음을 인지합니다.
- 6. 신탁계좌로 입금된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사업경비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7. 시행수탁자는 신탁계약 및 신탁사업약정에 의거, 신탁계좌의 잔액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신탁재산(현금)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시행위탁자가 부담함을 계약자는 인지합니다.
- 8.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한 시행수탁자의 분양대금반환 의무 등은 신탁계좌의 잔액 범위 내로 한정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탁자의 고유계정에 속하는 재산으로 위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 분양사무실 위치 안내

- 분양사무실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249번길12 더샵광주포레스트 107동 404호
- 분양문의 : 062-365-7778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위탁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재공급 대상 세대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송 등에 의해 최초 계약자의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첨 및 계약 권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이외의 사항 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파트 하자보수는「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37조, 38조, 39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되 며,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됨